



여성가족부

Ministry of Gender Equality & Family

공동협력사업

알아 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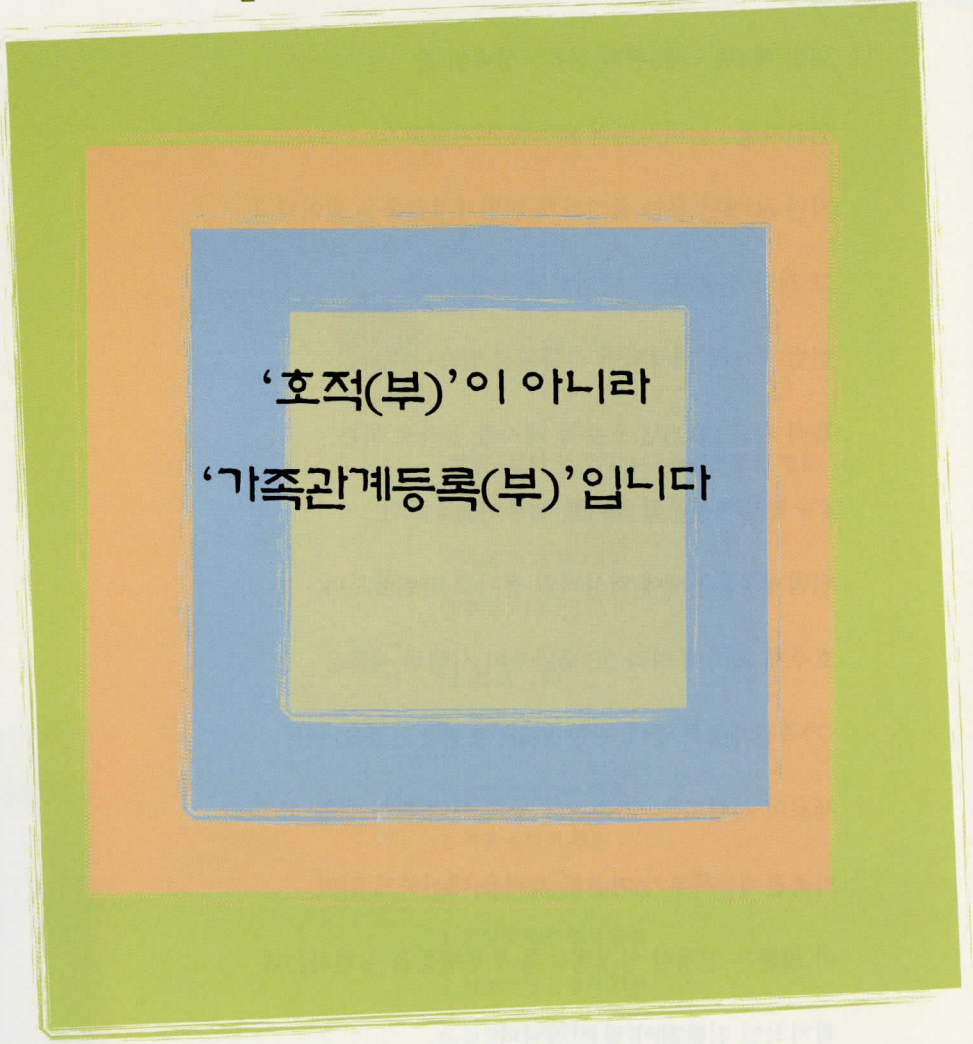
‘호적(부)’이 아니라

‘가족관계등록(부)’입니다.

법률구조법인

한국가정법률상담소

알아 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



‘호적(부)’이 아니라
‘가족관계등록(부)’입니다



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

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

민법 제4편·제5편의 친족·상속법 중

인간차별·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

지난 50여년 동안 줄기차게 민법개정운동을 벌여왔고,

그 결과 부부평등·남녀평등한 방향으로

민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특히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

4차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이루어냄으로써,

민법개정운동사에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했으며,

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될 새로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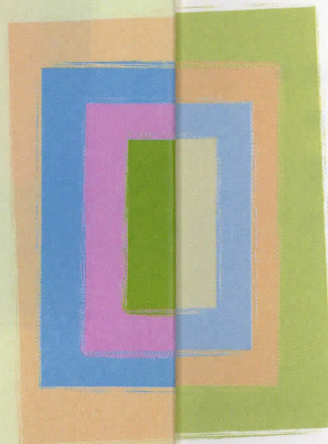
‘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’이 만들어졌습니다.

새로이 시행되는 ‘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

가족관계등록부가 기존의 호적을 대신하게 되며

이 법률은 진정한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을 실현하는데

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.



호주제 폐지는

2008년 1월 1일부터

신규 혼인 신고 시

차례

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관계등록 제도 / 4

목적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/ 9

자녀의 성과 본 / 12

친양자 / 13

Q & A / 15

부록 / 55

1. 기존 호적등본 견본

2. 기본 증명서 견본

3. 가족관계 증명서 견본

4. 혼인관계 증명서 견본

5. 입양관계 증명서 견본

6.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견본